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세 징 수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중중재산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징수절차를 마련하였고, 등기후 등록해야 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공매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공매통지서 송달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구분을 하였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체류 관련 허가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명확화(안 제5조)

「지방세징수법」상 ‘허가’로만 표현되어 있어 명칭이 ‘허가’가 아닌 ‘신고’, ‘자격부여’, ‘등록’과 같은 여러 행정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지방세조합장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변경(안 제8조)

지방세조합장의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지자체장과 일치하도록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다. 종중의 명의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 마련(안 제16조)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미비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라. 선박의 구분에 따른 압류 규정 명확화(안 제55조, 제56조)

선박을 등기 후 등록하는 선박과 등록만 하는 선박으로 구분하고 압류 절차를 각각 규정하여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마. 가상자산 체납 처분 규정 보완(안 제61조 및 제71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 및 제3자에게 압류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요구에도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압류한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조합이 수행하는 공매관련 사무범위 확대(안 제71조, 제71조의3, 제72조, 제96조, 제97조)

지방세조합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매 등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사무 관련 규정 조문을 이동하는 등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음.

사.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안 제80조)

현행 공매통지 시 일률적으로 도달주의를 적용하여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매입찰 취소, 매각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공매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공매통지서 송달 효력 발생시기를 구분하도록 함.

아. 결손처분 용어 변경(안 제106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법률적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1.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양도담보권자 등의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 및 중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 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

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고, 체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문서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이전을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을 “제7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매각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구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압류한 재산의 구매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구매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할 때에는 제71조, 제72조부터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매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은 “구매대행기관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구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기관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대행기관”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기관이 구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매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구매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구매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구매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6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106조의 제목“(결손처분)”을“(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을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결손으로 처리하며,”로,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그 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를 “제8조”로, “,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을 “,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로,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를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담보권자 등의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압류 관련 규정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생략)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 등'이라 한다)

② 양도담보권자 등으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재산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장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생략)  
<신설>

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각호-----  
 -----  
 ---.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

<신 설>

②·③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생략)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

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고, 체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문서로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이전을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  
-----.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 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3. (생략)

⑥·⑦ (생략)

제71조(공매)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  
-----  
-----  
-----  
-----  
-----.

1. 제7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

2.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71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매각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③·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  
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  
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  
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  
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본사·지사·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  
조합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  
다.

<삭 제>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71조의3(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한

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할 때에는 제71조, 제72조부터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은 “공매대행기관의 직원(인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공매대행기관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대행기관”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⑤ 공매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  
하여는 제71조제6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공매 통지) (생략)

<신설>

제80조(공매 통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  
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  
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  
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  
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  
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지방  
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  
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정리보류) ① -----  
---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결손으로 처리하며, -- 정리보류를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정리보류를 -----  
-----  
----- 정리보류를 -----  
----. <단서 삭제>

<p>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u> · 제3호,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u>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u> · 제2항 · 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u>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부칙</p> <p>제1조(시행일) ----- -----, ---- <u>제8조</u>----- ----- -----, <u>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 · 제3호</u>----- -- <u>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u> ----- -----.</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7